

배포 일시	2022. 9. 30.(금)			
담당 부서	주택정책관	책임자	과 장	정진훈 (044-201-3337)
	주택기금과	담당자	사무관	백두진 (044-201-3341)
보도일시	2022년 10월 4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	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3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청년·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

- 청년(최대 2억원)·신혼부부(최대 3억원)… 금리부담 완화도 함께 시행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「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」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·신혼부부 버팀목 대출(전세자금)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.
-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.
-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, 지방 1.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,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,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한다.

< 대출한도 확대 >

구분	청년		신혼부부			
	기존	변경	수도권		지방	
			기존	변경	기존	변경
대출한도	0.7억	2억	2억	3억	1.6억	2억
보증금 상한	1억	3억	3억	4억	2억	3억

-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*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.

*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한도는 1.5억, 신혼부부는 2.7억

-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,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.
- 그러나, 10월 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.2%p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.

- 아울러,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(구입자금)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*하는 방안도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.

* 「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(22.7.7 발표)」 및 「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(22.7.18 발표)」

-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,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*을 중도변경**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

* 현재는 대출신청 시 상환방식(①원리금균등, ②원금균등, ③체증식) 선택 후 만기 시까지 유지

** 1억 대출 시(잔여만기 10년, 금리 3%) 상환방식에 따라 원금균등(1.10백만원) > 원리금균등(0.95백만원) > 체증상환(0.28백만원) 순으로 월 지출액 감소(초기 6개월 평균)

-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(www.nhuf.molit.go.kr)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(www.enhuf.molit.go.kr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